

보도 일시	2022. 1. 23.(일) 12:00	배포 일시	1. 23.(일) 12:00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낙준 (02-2110-1520)
		담당자	주무관 이병수 (02-2110-1522)

방통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발간 -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기획·제작에 지침서로 활용 기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크리에이터 대상 디지털윤리 역량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1인 미디어의 활동영역이 사회 전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등 혁신기술 발전에 따라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디지털윤리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향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독자 1000명 이상 보유 크리에이터 11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윤리교육 경험이 없음 85.7%, 교육 필요성 느낌 91.9%로 조사됨(NIA, 2021)

이에 방통위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필요한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가이드북은 크리에이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등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북을 방통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아인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한국MCN협회, 샌드박스, 트레저헌터, 트래블라이 등 관련 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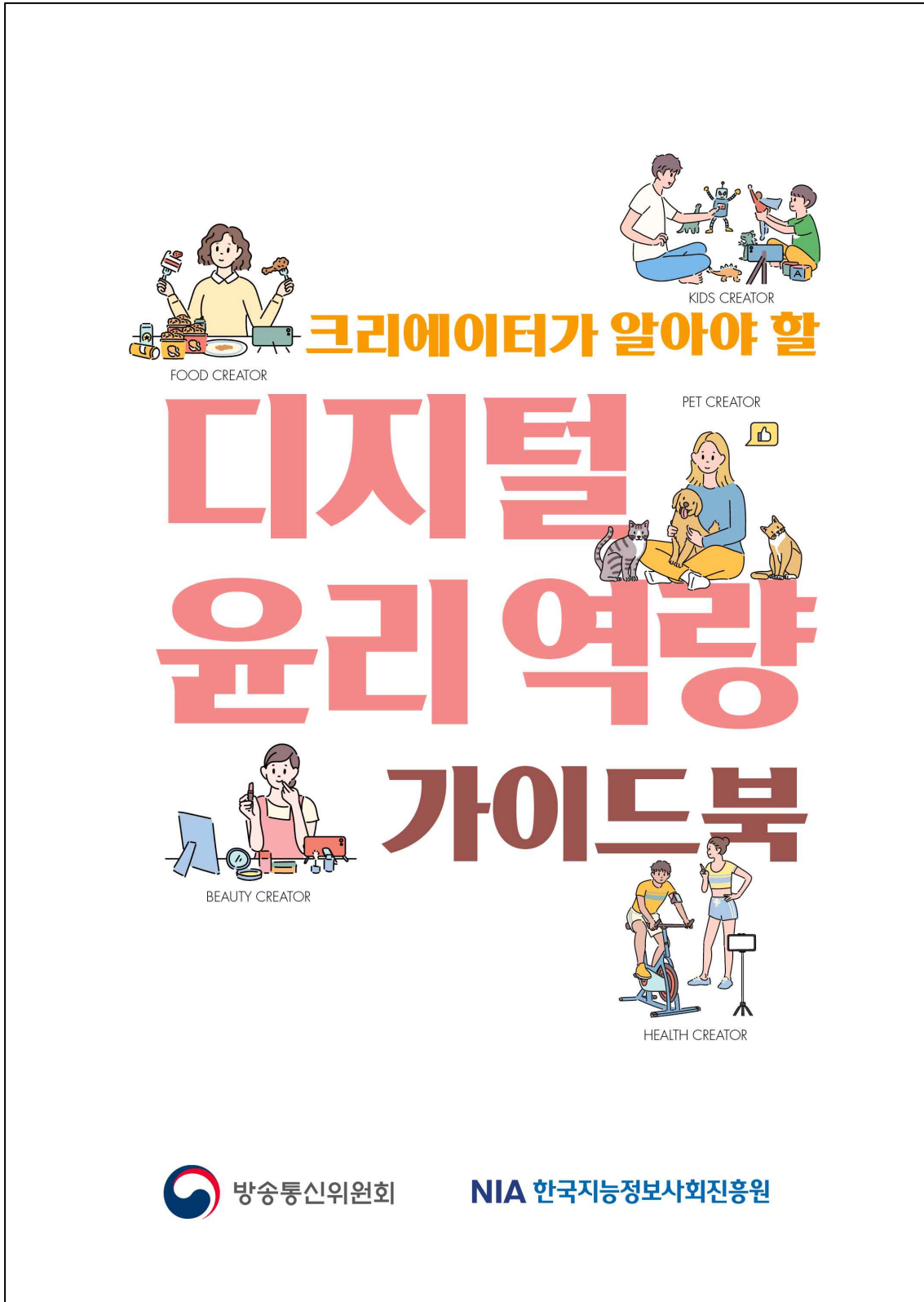
나아가 방통위는 가이드북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크리에이터를 꿈꾸거나 이미 활동 중인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시범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콘텐츠 생산자로서 디지털 윤리를 보다 편리하게 배우고 익혀, 한층 건강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하면서, “방통위는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표지 및 주요내용. 끝.



□ 가이드북 표지



□ 가이드북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윤리	슬기로운 크리에이터 생활을 위한 디지털윤리
	은밀하게, 치명적으로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사이버 폭력
	새로운 문화 권력 크리에이터와 1인 미디어
저작권	유행하는 커버송, 커버댄스는 상업적 목적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게시해도 된다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핑수',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다고요?
	30초 미만의 짧은 음원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인터넷 방송에서 공익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읽어주는 건 괜찮다고요?
	무료 음악이나 이미지도 자막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고요?
	CCL 표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해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다고요?
	제품과 완전히 똑같은 광고용 실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없으니 동물이 나오는 콘텐츠에도 저작권이 없다고요?
인격권 (명예훼손/개인정보· 초상권 침해/혐오표현)	공공연한 사실을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요?
	댓글로 모욕을 당했는데 아는 건 닉네임뿐이라 해결 방법이 없다고요?
	라이브 방송할 때 길에 지나가는 사람 정도는 앵글에 넣어도 된다고요?
	지인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리고 영상에 내보내는 건 괜찮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LOL'에 대해 얘기하는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요?
	엄마가 딸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구분	주요 내용
유해 콘텐츠 (가짜뉴스/폭력적·선정적·위험한 콘텐츠/콘텐츠 조작)	가짜뉴스나 오보나 다 같은 거니 받아써도 나중에 정정만 하면 된다고요?
	허위정보(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요?
	가짜뉴스는 자의적 해석이니 발견해도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콘텐츠를 제작해도 된다고요?
	'먹방'만큼 유명한 '술방'인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요?
	'흡연의 원리'에 대한 정보만 전달해도 위험한 콘텐츠가 된다고요?
	방송이나 영화와 달리 1인 미디어 동영상은 등급 기준이 없다고요?
	인터넷 방송은 지상파랑 옥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해도 된다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도 웬만해선 단속이 안 된다고요?
	더 많은 별풍선과 슈퍼챗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가공'은 필수라고요? 장난으로 촬영한 '몰카'나 원본 훼손 없는 재편집은 이용 허락이 필요 없다고요?
광고	'내돈내산' 리뷰 방송에서 대가 없는 특정 브랜드 노출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업체에서 홍보비를 1원이라도 받았으면 무조건 알려야 한다고요?
	협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지 않고 평가 후 추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